종 합 감 사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2021년 울릉군 경상북도종합감사 –

2021. 11.

경상북도
GYEONGSANGBUK-DO

1. 행정상 일람표

(단위 : 천 원)

번호	소 관	건 명	행정상 조치		재정상조치					
			시정	주의	회수	금액	감액	금액	추징	금액
계		7건	2	5	2	359	0	0	0	0
1	○ ○ 과 ○ ○ ○ ○ 과	초과근무수당 및 현업근무자 근태관리 관련	1	-	1	-	-	-	-	-
2	○ ○ 과	초과근무수당 부당 지급 및 수령	1	-	1	359	-	-	-	-
3	○ ○ 과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생 특별채용 등 부적정	-	1	-	-	-	-	-	-
4	○ ○ 과	선박용 유류 단가계약 적격심사 경영상태 평가 부적정	-	1	-	-	-	-	-	-
5	○ ○ 과 등	국민신문고 접수 민원업무 처리 부적정	-	1	-	-	-	-	-	-
6	○ ○ ○ ○ 과	농지전용허가(협의) 부적정	-	1	-	-	-	-	-	-
7	○ ○ 과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증명 미확인	-	1	-	-	-	-	-	-

경 상 북 도

시 정 요 구

제 목 **초과근무수당 및 현업근무자 근태관리 관련**

소 관 청 울릉군

관 계 부 서 ○○과, ○○○○과

내 용

울릉군 ○○과에서는 소속직원의 복무관리 및 초과근무수당 지급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과에서는 쓰레기 차량운전원의 복무관리 및 초과근무수당 지급 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1. 현업공무원 지정 및 운영 관련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5조 및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2021. 7. 23.) Ⅳ-4-나 “현업공무원 지정·해제 기준”, Ⅳ-4-나 “현업공무원 지정·운영에 대한 자체 점검”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현업 기관 및 직무의 성질상 상시근무체제를 유지할 필요가 있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도 정상근무를 할 필요가 있는 기관 소속 공무원에 대해서는 그 근무시간과 근무일을 따로 정할 수 있으며, 현업공무원 지정요건의 적합성, 시간외 근무의 필요성 및 적정성 등을 고려하여 기관별 현업공무원 자체 지정 기준을 수립하여야 하고 기관 내 현업공무원 지정에 대해서는 기관별 업무 분장, 근무체계 등이 다양하므로 각 기관장이 그 필요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기관 운영상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을 현업공무원으로 지정하여야 하고, 지방자치단체는 각 소속기관의 현업공무원 지정·운영 실태를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하며, 복무규정 제5조 등에 위배되는 사항이(① 기관별 자체 현업공무원 지정 기준 수립 여부(내부결재 확인) ② 현업공무원 지정 요건에 충족하는 직무인지 여부 ③ 해당 직무 수행을 위한 초과근무 인지 여부 등)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울릉군 ○○과에서는 2012. 12. 20.「울릉군 ◇◇◇◇◇ ◇◇ 및 ◇◇◇◇에 관한 규정」제정 이후 기관별 현업공무원 자체 지정 기준을 수립하고 각 기관장이 그 필요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기관운영상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을 현업공무원으로 지정하고 소속기관의 현업공무원 지정·운영 실태를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했다.

그런데 위 부서에서는 2012. 12. 20.「울릉군 ◇◇◇◇◇ ◇◇ 및 ◇◇◇◇에 관한 규정」제정 이후 2021. 9. 8. 감사일 현재까지 기관별 현업공무원 자체 지정 기준을 수립하지 않고 있으며, ○○○○과 6명의 공무원을 현업공무원으로 인정하여 초과수당을 지급하고 있어 매년 1회 이상 현업공무원 지정·운영 실태를 점검하여야 함에도 점검하지 아니하였다.

2. 현업공무원 근태관리 부적정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5조,「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5조,「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울릉군 ◇◇◇◇◇ ◇◇ 및 ◇◇◇◇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현업 기관 및 직무의 성질상 상시근무 체제를 유지할 필요가 있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도 정상근무를 할 필요가 있는 기관 소속 공무원에 대해서는 그 근무시간과 근무일이 같은 조에 따라 따로 정하여진 공무원(이하 “현업공무원” 이라 한다)에 대하여 근무시간 외의 근무명령을 하는 경우 제한 시간 67시간(실적분 10시간 포함)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있으며, 울릉군 현업공무원은 ① 생활쓰레기 처리부서(직접 쓰레기처리에 종사하는 차량운전원, 중기운전원, 매립시설관리 공무원) ② 상수도 정수장 근무자 ③ 보건의료원(간호사(입원실, 응급실), 청사방호원) ④ 독도관리사무소(독도에 상시근무하는 공무원) ⑤ 그 외에 상시 근무체계를 유지하여야 하고 휴일중 1/2이상을 출근하여 업무를

수행하며 월 평균 80시간 이상을 초과근무하여야 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단 비상대기 근무 제외) 중에서 군수가 따로 정한 공무원을 말하며, 현업공무원의 초과근무수당은 67시간(실적분 10시간 포함)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또한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에 따르면 초과근무수당은 개인별·초과근무일별 사전 초과근무명령에 따라 근무한 경우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고, 전일 초과근무한 내역을 개인별로 기재하여 초과근무 명령권자에게 보고함을 원칙으로 하며, 복무관련 주관부서는 초과근무명령대장을 비치하고 초과근무 현황을 관리하여야 하고, 초과근무명령을 받은 공무원은 초과근무개시 전까지 복무관련 주관부서에 비치된 초과근무명령대장에 명령받은 내역을 기재하여야 하며, 초과근무명령대장에 기재되지 않은 초과근무에 대하여는 수당을 지급할 수 없고, 초과근무를 한 공무원은 근무종료 후 출입구나 당직실에 비치된 초과근무확인대장에 자필 기재·서명 후 확인대장을 마감하여 당직담당 부서에 인계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울릉군 ○○○○과에서는 쓰레기처리 차량운전원 지방□□□□□ AAA, 지방□□□□□ BBB, 지방□□□□□ CCC, 지방□□□□□ DDD, 지방□□□□□ EEE, 지방□□□□□ FFF을 총무과에 현업공무원 지정 요청하여야 했고, 현업공무원으로 간주하여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며 개인별·초과근무일별 사전 초과근무명령에 따라 근무하도록 하여야 했으며, 전일 초과근무한 내역을 개인별로 기재하여 초과근무 명령권자에게 보고하여야 했고, 초과근무명령을 받은 공무원은 초과근무개시 전까지 복무관련 주관부서에 비치된 초과근무명령대장에 명령받은 내역을 기재하여야 하며, 초과근무명령대장에 기재되지 않은 초과근무에 대하여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야 했다.

그런데 위 부서에서는 쓰레기처리 차량운전원 지방□□□□□ AAA, 지방□□□□□ BBB, 지방□□□□□ CCC, 지방□□□□□ DDD, 지방□□□□□ EEE, 지방□□□□□ FFF을 총무과에 현업공무원 지정 요청하지 않고 「울릉군 ◇◇◇◇◇ ◇◇ 및 ◇◇◇◇에 관한 규정」 제4조 생활쓰레기 처리부서(직접 쓰레기처

리에 종사하는 차량운전원, 중기운전원, 매립시설관리 공무원)의 규정으로 군수가 지정한 것으로 간주하여 현업공무원을 운영하였고, 지방□□□□□ AAA, 지방□□□□□ BBB, 지방□□□□□ CCC, 지방□□□□□ DDD, 지방□□□□□ EEE, 지방□□□□□ FFF은 본청 ○○○○과 소속으로 ○○○○과장이 복무관리 하여야 함에도 본청과 청소차 근무지가 멀다는 이유로 ㄱ동, ㄴ동, ㄷ면, ㄹ면 4개 지역의 거주지에서 가까운 환경미화원 대기실로 출근하여 근태관리 되고 있지 않음에도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며 ① 개인별·초과근무일별 사전 초과근무명령에 따라 근무하였는지 여부, ② 전일 초과근무한 내역을 개인별로 기재하여 초과근무 명령권자에게 보고하였는지 여부, ③ 초과근무명령을 받은 공무원은 초과근무개시 전까지 복무관련 주관부서에 비치된 초과근무명령대장에 명령받은 내역을 기재하였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여 초과근무명령대장에 기재되지 않은 초과근무에 대하여는 수당을 지급할 수 없음에도 지방□□□□□ AAA, 지방□□□□□ BBB, 지방□□□□□ CCC, 지방□□□□□ DDD, 지방□□□□□ EEE, 지방□□□□□ FFF에게 매월 초과근무 80시간(실적분 10시간 포함)분의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였다.

조치할 사항 **울릉군수**는

① 앞으로는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라며,(주의)

② 현업공무원 지정에 대한 적정한 검토 없이 운영 중인 「울릉군 ◇◇◇◇◇ ◇◇ 및 ◇◇◇◇에 관한 규정」을 관련 규정에 맞게 개정하시기 바랍니다.(시정)

경 상 북 도

시 정 요 구

제 목 **초과근무수당 부당 지급 및 수령**

소 관 청 울릉군

관 계 부 서 ○○과

내 용

울릉군 ○○과에서는 군수 및 부군수 수행비서와 운전원에게 초과근무명령서 및 초과근무내역서를 수기로 작성하여 관리하고 그에 따라 매월 80시간 까지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1조의2 및 제2조,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에 따르면 지방공무원은 법령과 직무상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하여야 하고, 공무원의 1주간 근무시간은 점심시간을 제외한 40시간으로 하며, 토요일은 휴무함을 원칙으로 하고, 근무명령에 의하여 규정된 근무시간외 근무한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일반직 공무원의 시간외 근무명령은 1일 4시간 월 67시간(실적분 10시간 포함)을 초과할 수 없고, 지방자치단체장 및 부단체장의 공식적인 회의나 행사를 상시 직접 수행하는 공무원(수행비서 및 운전원에 한함)의 경우 휴일 및 토요일에 한하여 8시간 범위 내 시간외근무명령 발령가능하며 월 80시간(실적분 10시간 포함) 범위 내에서 초과근무수당을 지급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또한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에 따르면 초과근무수당을 근무실적과 관계없이 균등 배분하거나, 대리입력, 사적용무 후 입력, 심야복귀 후 입력 등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초과근무수당을 신청하는 행위 등을 “부정한 방법에 따른 초과근무수당 수령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울릉군 ○○과에서는 군수 및 부군수를 수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휴일 및 토요일에 초과근무명령서에 의하여 근무시간 외 실제 근무한 초과근무 내역서의 시간만을 합산하여 초과근무시간을 규정시간의 범위 안에서 지급하여야 했다.

그런데 울릉군 ○○과에서는 아래 [표]와 같이 실제 초과근무를 하지 않고 초과근무명령서와 초과근무내역서를 작성한 ○○과 지방□□□□ GGG에게 초과근무수당 96,990원을, 지방□□□□□ HHH에게 초과근무수당 262,840원을 부당하게 지급하였고, ○○과 지방□□□□ GGG, 지방□□□□□ HHH은 아래 [표]의 금액을 부당하게 수령하였다.

[표] 초과근무수당 부당 수령 내역

소 속	직 급	성 명	허위 초과근무 발령 및 초과근무내역 일자	부당수령 시 간	단 가	부당수령 금 액	비 고
합 계						359,830원	
○○과	지방□□□□	GGG	2021. 7. 31	8시간	12,124원	96,990원	
	지방□□□□□	HHH	2021. 8. 1.	24시간	10,952원	262,840원	
			2021. 8. 8.				
			2021. 8. 15.				

조치할 사항 **울릉군수**는

① 앞으로는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라며,(주의)

② 부당하게 지급된 초과근무수당에 대하여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조치하시기 바랍니다.(시정)

경 상 북 도

주 의 요 구

제 목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생 특별채용 등 부적정**

소 관 청 울릉군

관 계 부 서 ○○과

내 용

울릉군 ○○과에서는 지역의 우수 인재 채용을 위해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생 선발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1.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생 선발공고 부적정

「울릉군 ◈◈◈◈◈ ◈◈◈◈◈ ◈◈규칙」(경상북도울릉군규칙 제1064호, 2019. 8. 30., 전부개정) 제3조에 따르면 울릉군수는 장학생을 선발하고자 할 때에는 선발대상 학과 및 졸업 후 임용가능 직급, 지원자격, 선발기준, 인원 및 방법 등을 선발예정일 2개월 전에 울릉군 홈페이지, 지방자치단체 통합인터넷원서 접수센터에는 반드시 게재하고 신문 또는 방송 등 기타 효과적인 방법에 의하여 공고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울릉군 ○○과에서는 2020년 및 2021년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생을 선발함에 있어 울릉군 홈페이지, 지방자치단체 통합인터넷원서 접수센터에 반드시 공고하고 신문 등 효과적인 방법에 의하여 추가 공고하여 다수의 우수한 인재가 응시하도록 하여야 했다.

그런데 위 부서에서는 아래 [표 1]과 같이 장학생 선발공고를 하면서 울릉군 홈페이지 게재 및 ▲▲▲▲학교에만 장학생 추천 협조 문서를 발송하는 것으로

처리하여 거주지 제한을 충족하는 불특정 다수의 응시 기회를 제약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표 1] 연도별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생 선발공고 방법 및 거주지 제한

선발연도	공고일시	선발인원	접수인원	공고방법	거주지 제한
2020년	2019. 9. 10.	2명 (△△9급)	2명 (△△9급)	울릉군 홈페이지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서(2020년 2월)로서 2019년 1월 1일 이전까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5년 이상 계속하여 울릉군으로 되어 있는 사람
2021년	2020. 12. 18.	3명 (▼▼8급, □□9급, △△9급)	3명 (▼▼8급, □□9급, △△9급)	울릉군 홈페이지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서(2021년 2월)로서 2020년 1월 1일 이전까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5년이상 계속하여 울릉군으로 되어 있는 사람

2.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생 경력경쟁임용시험 미실시 채용

「지방공무원법」 제27조에 따르면 공무원의 신규임용은 공개경쟁임용시험으로 하고 같은 법 제41조의4에 따라 재학 중 장학금을 받고 졸업한 사람을 임용하는 경우 경력 등 응시요건을 정하여 같은 사유에 해당하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경쟁의 방법으로 임용하는 시험(이하 “경력경쟁임용시험”이라 한다)으로 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고, 다만 다수인을 대상으로 시험을 실시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으로 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6조의2에 따르면 「지방공무원법」 제41조의4에 따라 재학 중 장학금을 받고 졸업한 사람을 임용하는 경우도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을 통한 임용을 실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같은 법 제41조의4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우수한 공무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학교의 재학생으로서 공무원으로 임용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졸업 후 일정한 의무복무 기간을 부과하여 공무원으로 근무하게 할 수 있고 장학금으로 지급될 학비의 범위, 지급대상, 채용방법, 의무복무 기간, 의무불이행 시 환수할 금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55조 제1항에 따르면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은 필기시험과 면접시험·실기시험 또는 서류전형의 방법으로 실시하되 법 제41조의4에 따라 재학 중 장학금을 받고 졸업한 사람을 임용하는 경우 서류전형과 면접시험 또는 실기 시험의 방법으로 실시하도록 되어 있다.

아울러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 제2조에 따르면 장학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자는 고등학교·전문대학 및 대학의 학과 중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는 학과의 재학생으로서 제5조 규정에 의하여 선발된 자(이하 “장학생”이라 한다)로 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규정 제4조 및 제5조에 따르면 장학생이 되려는 사람은 재적하고 있는 학교의 장의 추천을 받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지원서를 제출해야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원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서류전형, 필기시험, 면접시험 및 실기시험(실기시험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실시)을 통하여 장학생을 선발하도록 되어 있으며,

같은 규정 제13조에 따르면 장학생이 학교를 졸업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력경쟁임용시험등(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임용시험을 말한다)에 응시하여야 하되,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 학과와 관련된 공무원임용시험에 이미 합격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되어 있다.

또한 행정안전부에서는 ○○○○○과-1235(2011. 4. 18)호로 장학금 지원 후 지방공무원 특별임용제도 운영 시 유의사항을 통보하면서 특별임용시에도 공개

경쟁시험에 준하는 엄격한 선발고사를 실시하도록 통보하였으며, 같은 해 7. 21. ○○○○○과-2295호로 동일한 내용을 재강조 통보하였다.

따라서 울릉군 ○○과에서는 지방공무원임용후보자 장학생을 선발하고 학교 졸업 후 지방공무원으로 임용할 때에는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를 대상으로 서류전형과 면접시험 또는 실기시험의 방법으로 경력경쟁임용시험을 거쳐 합격한 자에 한하여 지방공무원으로 임용하여야 했다.

그런데 위 부서에서는 아래 [표 2]와 같이 지방공무원임용후보자 장학생을 대상으로 관련 법령에서 규정한 임용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부적정하게 지방공무원으로 특별채용하였다.

[표 2] 연도별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생 공무원 채용현황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생 선발						지방공무원 임용	
장학생 선발연도	선발직급	선발인원	성 명	선발방법	학교명	공무원 임용일	공무원 채용방법
2014년	□□9급	1명	AAA	필기시험+면접시험	▨대 ◷학과	2018. 3. 27.	장 학 생 특별채용
2015년	□□9급	1명	BBB	〃	◎대 ☆학과	2019. 2. 26.	장 학 생 특별채용
2016년	□□9급	1명	CCC	〃	●대 ■학과	2020. 2. 24.	장 학 생 특별채용
2017년	□□9급	1명	DDD	〃	♤대 ♠학과	2021. 4. 1.	장 학 생 특별채용
2017년	▽▽▽▽9급	1명	EEE	〃	▨고 ▦학	2019. 2. 20.	장 학 생 특별채용
2018년	□□9급	1명	FFF	〃	♥대 ♧학부	기간 미도래	-
2018년	●●9급 (◇◇)	1명	GGG	〃	◁대 ◀과	〃	-
2020년	●●9급 (◷◷)	1명	HHH	〃	▷대 ▶학과	〃	-
2021년	☆☆8급	1명	JJJ	〃	◈대 ◉학과	〃	-
2021년	●●9급	1명	KKK	〃	◐대 ◑과	〃	-
2021년	●●9급 (◇◇)	1명	LLL	〃	▥대 ▥학	〃	-

조치할 사항 울릉군수는

① 앞으로는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주의)

경 상 북 도

주 의 요 구

제 목 **선박용 유류 단가계약 적격심사 경영상태 평가 부적정**

소 관 청 울릉군

관 계 부 서 ○○과

내 용

울릉군 ○○과에서는 선박용 유류 단가계약의 낙찰자 결정을 위한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아래 [표 1]과 같이 계약을 체결하였다.

[표 1] 선박용 유류 단가계약 체결 현황

(단위 : 천 원)

계약명	계약체결일	계약금액	개찰순위	계약상대자
2020년 울릉군 ■■■■■ 유류 단가계약	2020. 2. 6.	95,090 (1,572원 × 60,490ℓ)	1	울릉군◐조합
2020년 ◉◉◉◉◉ 선박용 유류구매	2020. 2. 26.	382,000 (1,528원 × 250,000ℓ)	1	◈주유소
2021년 ◉◉◉◉◉ 선박용 유류 단가계약	2021. 2. 18.	401,280 (1,254원 × 320,000ℓ)	1	◈주유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 일반 입찰에 부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재정 지출의 부담이 되는 입찰에서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 입찰자부터 순서대로 입찰자의 납품이행능력, 입찰가격, 신인도 등을 심사한 결과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고,

경영상태 평가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나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유효기간 안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도록 되어 있으며, 적격심사서류 중 입찰공고일 후에 발생·신고·수정된 자료는 심사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계약담당자는 제출된 서류의 미비, 오류, 미제출 등으로 인하여 적격통과점수에 미달되는 적격심사대상자에게 1회에 한하여 7일(재난 복구사업은 3일) 이내에 심사서류를 보완·추가 제출하게 하도록 되어 있고, 보완·추가 요구한 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초 제출된 서류로만 심사하도록 되어 있으며,

기한 안에 보완·추가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및 보완·추가 제출한 후에도 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에 미달되는 자는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고 차순위 입찰자를 동일한 방법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울릉군 ○○과에서는 적격심사대상자가 제출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의 등급평가일 및 유효기간을 확인하여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받고 유효기간 안에 있는 신용평가등급만을 인정하여 평가하여야 했고, 입찰공고일 이후에 평가하거나 유효기간 안에 있지 아니한 신용평가등급에 대하여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보완요구하고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최하등급으로 평가하여야 했으며,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후순위자에게 심사서류 제출을 요구하여 적격심사를 하여야 했다.

그런데 위 부서에서는 '2020년 울릉군 ▣▣▣▣▣ 유류 단가계약', '2020년 ◉◉◉◉◉ 선박용 유류구매', '2021년 ◉◉◉◉◉ 선박용 유류 단가계약'의 1순위 업체에 대한 적격심사를 하면서 아래 [표 2]와 같이 신용평가등급 확인서의 등급평가일이 입찰공고일 이후이거나,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아닌 심의결과 확인서[1]를 제출받았음에도 이에 대한 확인을 소홀히 하고 보완요구 없이 평가등급을 부당

1) 심의결과 확인서에 기재된 "유의사항"에 따르면 심의결과 확인서는 평가 의뢰기업의 심의결과에 대한 내부확인용으로만 사용가능하며, 평가 완료 후 발급되는 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와 차이가 있고, 심의결과 동의 시 동의일자로 등급전송 및 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발급된다고 되어 있음

하게 인정하여 심사하였다.

[표 2]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내역

계약명	업체명	입찰공고일	등급평가일	등급유효기한	신용평가 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	비고
2020년 울릉군 ■■■■■ 유류 단가계약	울릉군◐조합	2020. 1. 29.	2020. 2. 6. (심의확정일)	-	epBBB0	심의결과 확인서 제출
2020년 ◉◉◉◉◉ 선박용 유류구매	◈주유소	2020. 2. 17.	2020. 2. 25.	2020. 6. 30.	B+	입찰공고일 이후 평가
2021년 ◉◉◉◉◉ 선박용 유류 단가계약	◈주유소	2021. 2. 4.	2021. 2. 16.	2021. 6. 30.	B+	입찰공고일 이후 평가

한편 위 사실이 감사기간 중 지적되어 계약담당자를 통해 해당 업체들에게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받고 유효기간 안에 있는 신용평가등급 확인서의 제출을 요청한 결과 이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 결과 울릉군 ○○과에서는 아래 [표 3]과 같이 정당하게 평가할 경우 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85점)에 미달하는 부적격 업체들과 계약을 체결하였다.

[표 3] 선박 유류 단가계약 적격심사 결과

(단위 : 천 원)

계약체결현황				심사분야·항목		배점	심사평점	정당평점	비고
계약명	**계약상대자**	**계약금액**	**계약체결일**	**합계**			**85**	**65**	
2020년 울릉군 ■■■■■ 유류 단가계약	울릉군◐조합	95,090	2020. 2. 6.	물품납품 이행능력	기술능력	10	10	**10**	적격통과 점수 (85점)
					경영상태	20	20	**0**	
				입찰가격		70	55	**55**	
				신인도		+2~-2	0	**0**	
				결격사유		-40	0	**0**	
계약명	**계약상대자**	**계약금액**	**계약체결일**	**합계**			**90.2**	**62.2**	
2020년 ◉◉◉◉◉ 선박용 유류구매	◈주유소	382,000	2020. 2. 26.	물품납품 이행능력	기술능력	10	10	**10**	적격통과 점수 (85점)
					경영상태	30	28	**0**	
				입찰가격		60	52.2	**52.2**	
				신인도		+2~-2	0	**0**	
				결격사유		-40	0	**0**	

계약체결현황				심사분야·항목		배점	심사평점	정당평점	비고
계약명	계약상대자	계약금액	계약체결일	합계			91.34	63.34	
2021년 ◉◉◉◉◉ 선박용 유류 단가계약	◈주유소	401,280	2021. 2. 18.	물품납품 이행능력	기술능력	10	10	10	적격통과 점수 (85점)
					경영상태	30	28	0	
				입찰가격		60	53.34	53.34	
				신인도		+2～-2	0	0	

조치할 사항 울릉군수는

① 앞으로는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주의)

경 상 북 도

주 의 요 구

제 목 **국민신문고 접수 민원업무 처리 부적정**

소 관 청 울릉군

관 계 부 서 ○○과 등

내 용

울릉군에서는 군민들이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불편사항 등에 대하여 제기한 민원을 국민신문고로 통합 접수하여 조사·처리하고 있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르면 민원을 처리하는 담당자는 담당 민원을 신속·공정·친절·적법하게 처리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제5조 제1항에 따르면 민원인은 행정기관에 민원을 신청하고 신속·공정·친절·적법한 응답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되어 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르면 행정기관은 법령에 관하여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질의민원은 14일 이내, 제도·절차 등 법령 외의 사항에 관하여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질의민원은 7일 이내, 건의민원을 접수한 경우에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14일 이내에 처리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르면 행정기관의 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그 처리기간 내에 민원을 처리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민원의 처리기간의 범위에서 그 처리기간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고, 연장된 처리기간 내에 처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민원인의 동의를 받아 그 민원의 처리기간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다시 연장할 수 있으며, 처리기간을 연장하였을 때에는 처리기간의 연장 사유와 처리완료 예정일을 지체 없이 민원인에게 문서로 통지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르면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의

처리상황과 운영 실태를 매월 1회 이상 확인·점검하여 법령 위반 사실을 발견하거나 민원 처리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시정하고, 그 민원 처리와 관련 있는 직원에 대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민원이 접수된 날부터 30일이 지났으나 처리가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처리 진행상황과 처리완료 예정일 등을 문서로 통지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민원업무를 총괄하는 울릉군 ○○과에서는 민원의 처리 상황과 운영 실태를 정기적으로 확인·점검하고 처리기한이 지연되고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했다.

그런데 위 부서에서는 민원 처리 상황과 운영 실태를 정기적으로 확인·점검하지 아니하였고, 울릉군 ○○○○○○○○ 등 15개 부서에서는 2018. 7. 1.부터 2021. 7. 30.까지 아래 [표]와 같이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민원 2,072건 중 316건을 지연 처리하였으며, 특히 그 중에서도 32건은 30일에서 최장 489일까지 지연하여 처리하는 등 국민신문고 접수 민원업무를 부적정하게 추진하였다.

[표] 울릉군 민원처리 법정기한 지연 현황

(단위 : 건수)

구 분	총 접수	지연민원	지연율	처리기간 30일 이상 지연 건수[2]	비고
계	2,072	316	15%	32건	시스템 미입력 등 단순누락 건수제외
2018년	285	54	19%	11	
2019년	929	76	8%	5	
2020년	589	92	16%	9	
2021년	269	94	35%	7	

※ 울릉군 ○○과 제출자료

2) [별첨] 2018.7.1. ~ 2021.7.30. 기간 중 민원처리 기한을 30일 이상 넘겨서 처리한 민원현황

[별첨] 울릉군 민원처리 법정기한 30일 이상 지연처리 현황

연번	민원내용	접수일	처리기한	처리일	지연일수	담당부서	처리 지연사유
1	◉◉◉◉◉ 운영에 관한 민원	2018-07-02	2018-07-10	2018-08-09	30	○○○○○○○	업무처리 미숙으로 인한 지연
2	○○○○○○○ AAA님 칭찬	2018-07-05	2018-07-13	2018-10-15	94	○○○○○○	처리담당자 업무 미숙지(처리지연)
3	울릉도 관광버스의 횡포를 고발	2018-08-09	2018-08-20	2019-01-22	155	○○○○○○	처리담당자 업무 미숙지(처리지연)
4	[생활불편신고]장애인 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2018-08-21	2018-08-29	2019-02-12	167	○○○○○	담당자 전출로 인한 인수인계 미흡으로 인해 처리 지연
5	악질 분양호텔운영사를 제보	2018-09-18	2018-10-01	2019-03-07	157	○○○○○○	처리담당자 업무 미숙지(처리지연)
6	◆◆◆◆◆◆관광버스기사	2018-10-08	2018-10-17	2019-03-07	141	○○○○○○	처리담당자 업무 미숙지(처리지연)
7	가출청소년 쉼터 필요성	2018-12-17	2018-12-26	2019-02-07	43	○○○○○	담당자 인사이동으로 인한 업무 인수인계 미흡으로 처리 지연
8	조사자 겁박, 명단 밝히세요	2018-12-17	2018-12-26	2019-03-21	85	○○○○○○	담당자 인사이동으로 인한 업무 인수인계 미흡으로 처리 지연
9	친일잔재 발본색원 협조요청	2018-12-17	2018-12-26	2019-04-05	100	○○○○○○	담당자 인사이동으로 인한 업무 인수인계 미흡으로 처리 지연
10	조사자 겁박, 명단 밝히세요	2018-12-17	2018-12-26	2019-04-05	100	○○○○○○	담당자 인사이동으로 인한 업무 인수인계 미흡으로 처리 지연
11	초미세먼지 대책 취약계층 경노당 공기청정기 사업이 오희려독이돼어돌아암	2018-12-31	2019-01-09	2019-03-12	62	○○○○○	담당자 미처리 및 업무 인수인계 미흡으로 처리 지연
12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2019-04-29	2019-05-08	2019-06-10	33	○○○○○○○○	처리담당자 5.29지정으로 검토기간 소요로 인한 지연
13	우호도시 및 자매도시 할인 관련	2019-04-29	2019-05-08	2019-06-12	35	○○○	담당부서, 담당자 지정 지연
14	울릉도를 은 관광객의 편지한장	2019-06-10	2019-06-18	2019-08-19	62	○○○○○	전임자의 업무처리 미숙으로 인한 지연
15	과속방지턱 설치 요청	2019-07-01	2019-07-09	2019-08-22	44	○○○○○	담당부서재지정으로 인한 접수지연에따라처리지연
16	(SPP-1907-0203424)낙석위험 주의판 떨어짐 *안전신문고신고파일(사진)	2019-07-03	2019-07-11	2019-10-10	91	○○○○○	전임자들간의 업무 인수인계 처리 지연 및 업무 미숙으로 인한 지연
17	(비공개)제목 비공개	2020-01-13	2020-01-22	2020-09-01	223	○○○○○	과태료 부과는 하였으나 신규직원 업무 통지 지연
18	경정신청관련	2020-01-22	2020-02-04	2021-06-07	489	○○○	처리담당자 업무 미숙지
19	경상북도 울릉군은 신종코로나 바이러스에 어떻게 대처하나요?	2020-02-12	2020-02-20	2020-03-25	34	○○○○○	답변 결재 상신은 2020-02-15 하였으나, 모종의 사유로 처리 진행 중 중단되었고, 2020-03-24 다시 처리기관으로 재지정되어 2020-03-25 답변 완료
20	울릉군 ㄱ면 ㄴ리 산(임야) 328번지 및 331-1번지 소유자 산지관리법산림법,국토법등위반 의혹공익신고	2020-03-26	2020-04-14	2020-08-10	118	○○○○○	민원인 요청서류에 따른 기간 연장 통보 지연
21	(비공개)	2020-06-16	2020-06-24	2021-05-27	337	○○○○○	비공개로 인한 처리 지연사유 확인 불가(담당자 전출)
22	억지로 억지로 끌려 들어간 울릉도 여행	2020-07-23	2020-07-31	2020-08-31	31	○○○○○○	처리담당자 업무 미숙지(처리지연)
23	[생활불편신고]기타불편	2020-08-06	2020-08-14	2020-09-25	42	○○○○○	업무 숙지 부족 인한 지연
24	국가는 이런사람들에게 지원금과 복지금을 많이 주어야한다.	2020-08-31	2020-09-08	2021-01-27	141	○○○○○	접수 지연으로 인한 처리 지연(접수 당일 제출)
25	차량 통행 교차시 위험	2020-11-18	2020-11-26	2020-12-31	35	○○	처리담당자 업무 미숙지
26	독도 관련 의견	2021-02-17	2021-02-25	2021-04-14	48	○○○○○	처리담당자에 배정 지연으로 인한 지연
27	(SPP-2103-2004737)예전에 있었던 "독도▶▶▶길55" 도로명표지판 관련..	2021-03-20	2021-03-30	2021-05-11	42	○○○	담당자와 통화로 답변 후 서면 처리를 잊음
28	(SPP-2103-2007006)회원가입 후 다시 신고합니다. 독도 도로명 표지판! 독	2021-03-20	2021-03-30	2021-05-11	42	○○○	담당자와 통화로 답변 후 서면 처리를 잊음
29	병원의 환기시설 문제 관련 JTBC보도를 보았습니다. 의료법 개정 포함	2021-03-22	2021-03-30	2021-05-25	56	○○○	문서 배부 담당자 배부 실수로 인한 답변 지연
30	(SPP-2107-0911129)성인봉 등산로 제초작업요망	2021-07-12	2021-07-20	2021-08-24	35	○○○○○	담당부서 담당자 지정 지연
31	(SPP-2107-0909006)성인봉 등산로입구 kbs중계소 제초작업요	2021-07-12	2021-07-20	2021-08-24	35	○○○○○	담당부서 담당자 지정 지연
32	(SPP-2107-1308657)성인봉 등산로kbs중계소~입구 풀이어른키보다많이자랐습니다	2021-07-13	2021-07-21	2021-08-24	34	○○○○○	담당부서 담당자 지정 지연

※ 울릉군 ○○과 제출자료

조치할 사항 울릉군수는

① 앞으로는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주의)

경 상 북 도

주 의 요 구

제 목 농지전용허가(협의) 부적정

소 관 청 울릉군

관 계 부 서 ○○○○과

내 용

울릉군 ○○○○과에서는 농지의 전용허가(협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농지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르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에 따른 도시지역·계획관리지역 및 개발진흥지구 외의 지역에 있는 농지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규정된 단독주택 부지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농지의 면적이 1,000㎡를 초과하여 농지의 전용을 허가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제5항에 따르면 농지전용 제한면적을 적용함에 있어서 해당 시설을 설치하는 자가 동시 또는 수차에 걸쳐 그 시설이나 그 시설과 같은 종류의 시설의 부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연접하여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에는 그 전용하려는 농지의 면적과 그 농지전용허가신청일 이전 5년간 연접하여 전용한 농지면적을 합산한 면적을 해당 시설의 부지면적으로 보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2017년 농지업무편람」 제6장 제1절[3]에 따르면 2인 이상이 동일한 농지(1필지)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같은 종류의 시설부지로 전용하고자 농지소유자의 사용승낙서를 첨부하여 각각 농지전용을 신청할 경우는 1인이 신청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제한면적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울릉군 ○○○○과에서는 단독주택 건축신고에 따른 농지전용허가

3) 「2017년 농지업무편람」 P.260 <참고사항> “농지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 및 제5항 관련”

(협의)를 할 경우 국토계획법에 따른 지역·지구 및 전용면적이 1,000㎡를 초과하는지 여부, 다수인이 동일한 농지를 같은 종류의 시설 부지로 전용하는 경우 농지업무편람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적법하게 회신을 하여야 했다.

그런데 위 부서에서는 아래 [표]와 같이 국토계획법의 보전관리지역에 해당하는 울릉군 ㄱ면 ㄴ리 529번지의 단독주택 신축공사 부지조성을 위한 농지전용허가(협의) 신청에 대하여, 전용면적이 1,200㎡으로 「농지법」에 규정된 전용면적 1,000㎡를 초과하여 농지전용이 불가함에도 2018. 8. 10. 농지전용이 가능한 것으로 협의 회신하였고,

울릉군 ㄱ면 ㄷ리 695-2번지의 AAA(전용면적 : 414㎡, 313㎡), BBB(전용면적 : 409㎡, 548㎡)이 각각 2건으로 신청한 건축신고에 따른 농지전용허가(협의) 신청에 대하여, 1인이 신청한 것으로 간주하여 제한면적 기준을 적용하면 농지전용이 불가함에도 2018. 12. 11. 농지전용이 가능한 것으로 협의 회신하였으며,

국토계획법의 보전관리지역에 해당하는 울릉군 ㄴ면 ㄹ리 442-2번지 외 1필지의 단독주택 부지조성공사를 위한 농지전용허가(협의) 신청에 대하여, 당초 전용면적이 522㎡에서 1,800㎡로 변경[4] 신청되어 전용면적 1,000㎡를 초과하여 농지전용이 불가함에도 2021. 7. 28. 농지전용이 가능한 것으로 협의 회신하였다.

그 결과 수허가자 CCC 외 3인이 전용 제한면적을 초과하여 농업 외의 용도로 농지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4) 당초 단독주택 건축 목적으로 522㎡의 면적에 대하여 농지전용허가(협의) 회신함(2019. 1. 9.)

[표] 농지전용협의 내역

구분	협의일시	수허가자	농지전용협의 농지		토지소유자	전용목적
			소재지	전용면적㎡		
신규	2018.8.10.	AAA	ㄱ면 ㄴ리 529번지	1,200㎡	AAA	단독주택
신규	2018.12.11.	BBB	ㄱ면 ㄷ리 695-2번지	414㎡	CCC	단독주택
신규	2018.12.11.	BBB		313㎡		
신규	2018.12.11.	CCC		409㎡		
신규	2018.12.11.	CCC		548㎡		
변경	2021.7.28.	DDD	ㄴ면 ㄹ리 442-2외 1필지	당초 : 522㎡	DDD	단독주택
				변경 : 1,800㎡		

조치할 사항 울릉군수는

① 앞으로는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주의)

경 상 북 도

주 의 요 구

제 목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증명 미확인**

소 관 청 울릉군

관계부서 ○○과

내 용

울릉군 ○○과에서는 각종 인쇄출판물 제작 등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였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에 대하여 추정가격 1천만 원 이상의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면 그 중소기업자의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하도록 되어 있고, 제품조달계약 전후에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하려면 구매정보망에 등록된 정보에 따라 확인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제32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을 필요로 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에는 해당 자격요건에 적합한 자와 계약을 체결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울릉군 ○○과에서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인 각종 인쇄출판물 제작에 대하여는 그 추정가격이 1천만 원 이상일 경우 구매정보망에 등록된 직접생산확인 조회 등 정보를 확인한 뒤 직접생산증명서를 소지한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했다.

그런데 위 부서에서는 직접생산능력이 없는 사업자와 아래 [표]와 같이 10건

171,980천 원의 부당한 수의계약을 체결하였다.

[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증명 미소지 업체 계약 내역

(단위 : 천 원)

연번	계약명	업체명	계약일	계약금액	비고
	합 계			171,980	
1	각종 예산서 유인(2019)	ㄱ사	2019. 12. 27.	19,946	
2	2020년 직원♧♧ 제작	ㄴ애드	2020. 1. 6.	13,300	
3	2020년 울릉▥▥▥ 제작	ㄱ사	2020. 1. 10.	21,000	
4	울릉도·독도 ▷▷▷▷▷▷ 홍보책자(리플릿) 제작	ㄱ사	2020. 9. 14.	15,644	
5	울릉도·독도 ▷▷▷▷▷▷ 홍보책자(리플릿) 외국어판 제작	ㄱ사	2020. 9. 16.	14,718	
6	울릉도·독도 ▷▷▷▷▷▷ 교육용 그림 책자 제작	ㄷ커뮤니케이션	2020. 11. 4.	14,484	
7	각종 예산서 유인(2020)	ㄱ사	2020. 12. 22.	19,700	
8	2021년 울릉▥▥▥ 제작	ㄱ사	2021. 1. 15.	21,000	
9	2021년 직원♧♧ 제작	ㄱ사	2021. 1. 15.	15,930	
10	울릉도·독도 ▷▷▷▷▷▷ 교육용 그림 책자 제작 및 배부	ㄷ커뮤니케이션	2021. 3. 17.	16,258	

조치할 사항 울릉군수는

① 앞으로는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주의)